

조정신청서

신 청 인 O O(주민등록번호)
OO시 OO구 OO길 OO
전화 OOO - OOOO

피신청인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약혼예물반환 조정신청

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혼예물로 지급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신청인은 199○. ○. 대학을 졸업하고 모회사의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회사를 다니던 자로 신청인의 대학동창 소개로 피신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피신청인을 소개해준 대학동창은 사촌언니의 소개로 피신청인을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. 피신청인은 스스로 서울의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주식회사 ○○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관련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작단계이나 꽤 전망있는 사업체를 가진 유능한 사업가라고 하며 명함을 주었습니다.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4차례 만나면서 정이 들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

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기로 하였습니다.

- 2. 신청인은 외동딸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다를 울 강남에서 50평 정도의 한식집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. 피신청인은 자신의 형1명과 어머니를 참석시키고 신청인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.
- 3. 약혼예물은 피신청인이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양해로 신청인쪽 부모님이 모든 약혼예물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예물로는 간단한 금 가락지와 피신청인이 가진 차가 너무 오래 되었다고 하여 서울○○카 ○○○ ○호 그렌져 승용차를 마련해 주었습니다.
- 4. 약혼식이 끝나고 1달 정도 지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신청인의 소외 고교동창을 만나게 되어 상호 인사를 하게되었습니다. 그 다음날 고교동창이 신청인을 만나자고 해 H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동창으로부터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. 동창은 몇 일전 P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신청인은 그 동료들과 동창의 일행에 접근하여 추태를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. 동창은 경찰조사결과로 알게 된 사실이라며 피신청인은 서울의 명문대 졸업생도 아니고 현재 벤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전과자라는 것이었습니다.
- 5.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약혼을 해제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준 약혼예물중 금가락지는 반환 받지 않아도 승용차는 반환 받아야 하겠기에 이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자동차매매계약서1통1. 자동차등록원부1통1. 증인의 진술서1통1. 약혼해제내용증명우편1통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위 청구인 〇 〇 〇 (인)



자동차의 표시

1. 자동차등록번호: 서울ㅇㅇ다ㅇㅇㅇ호

1. 형식승인번호: ○-○○○-005-006

1. 차 명: ○ ○

1. 차 종: 승용자동차

1. 차 대 번 호: ○○

1. 원 동 기 형 식: 〇〇

1. 등 록 연 월 일 : 1997

1. 최 종 소 유 자: △ △

1. 사 용 본 거 지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. 끝.

제출법원	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		
제출부수	신청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49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이의신청(가사소송법 제60조, 민사조정법 제36조) ·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가사소송법 제60조, 민사조정법 제34조)		
비 용	・인지액: ※ 아래(1)참조 ・송달료: 당사자수 × 000원(1회송달료) ×5회분		

※ 인 지 액(조정절차의 수수료) -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

- ①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,000원으로 한다.
- ②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,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「민사조정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,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,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